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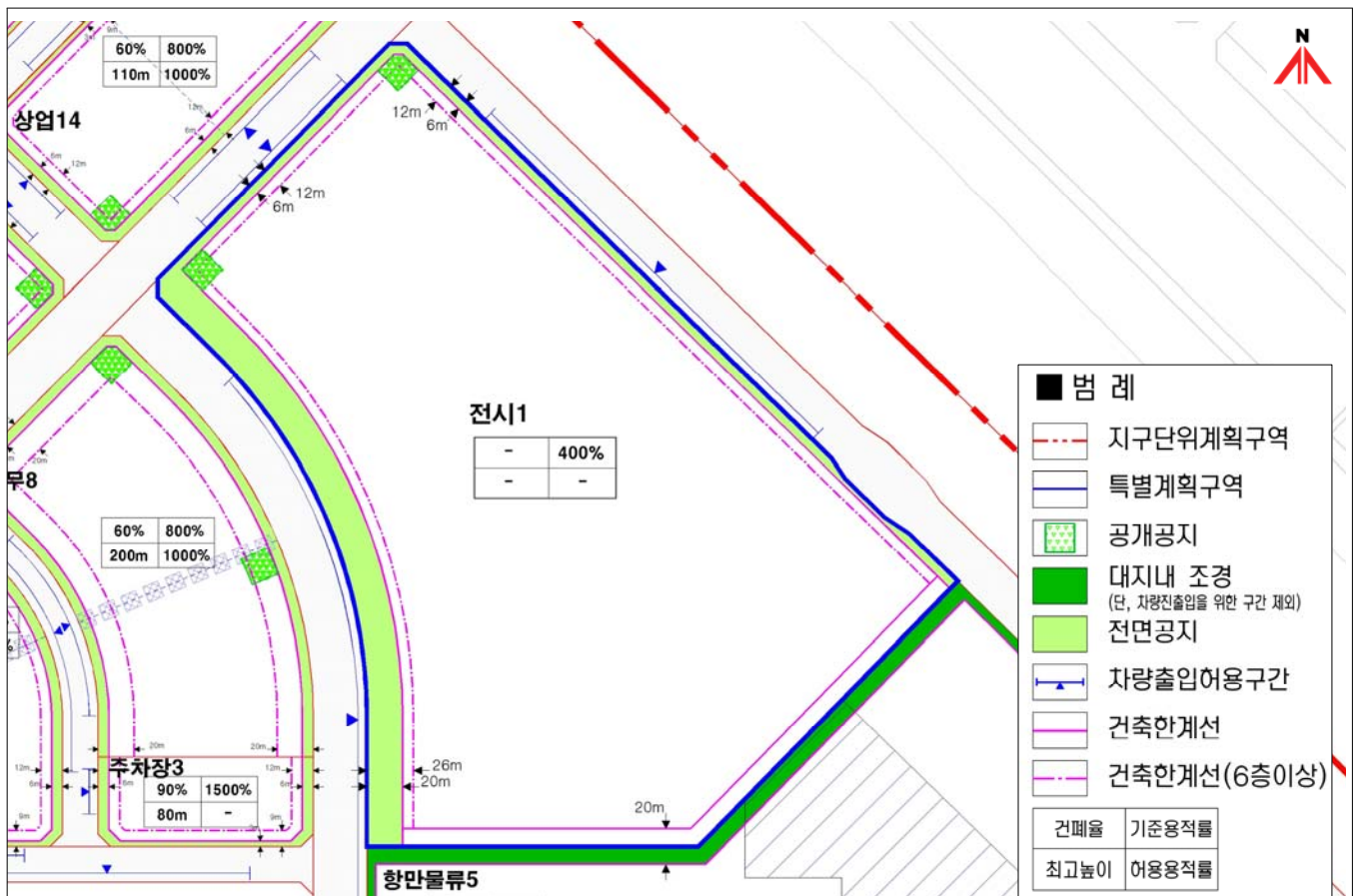
#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전시1 (진해구 용원동 1333번지)	특별 계획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계획구역 지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장 부지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의 복합적인 개발이 예상되는 곳이나, 현 시점에서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li> <li>- 따라서 사업주체가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li> </ul> </li> <li>○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집회장, 공연장), 업무시설 등 준공업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용도</li> <li>- 밀도 : 용적률 400% 이하</li> <li>- 건축선 : 결정도 참조</li> <li>- 형태 : 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li> <li>-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시 결정토록 할 것</li> </ul> </li> </ul>

※ 최초결정 : 진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06-251호, 2006.08.03)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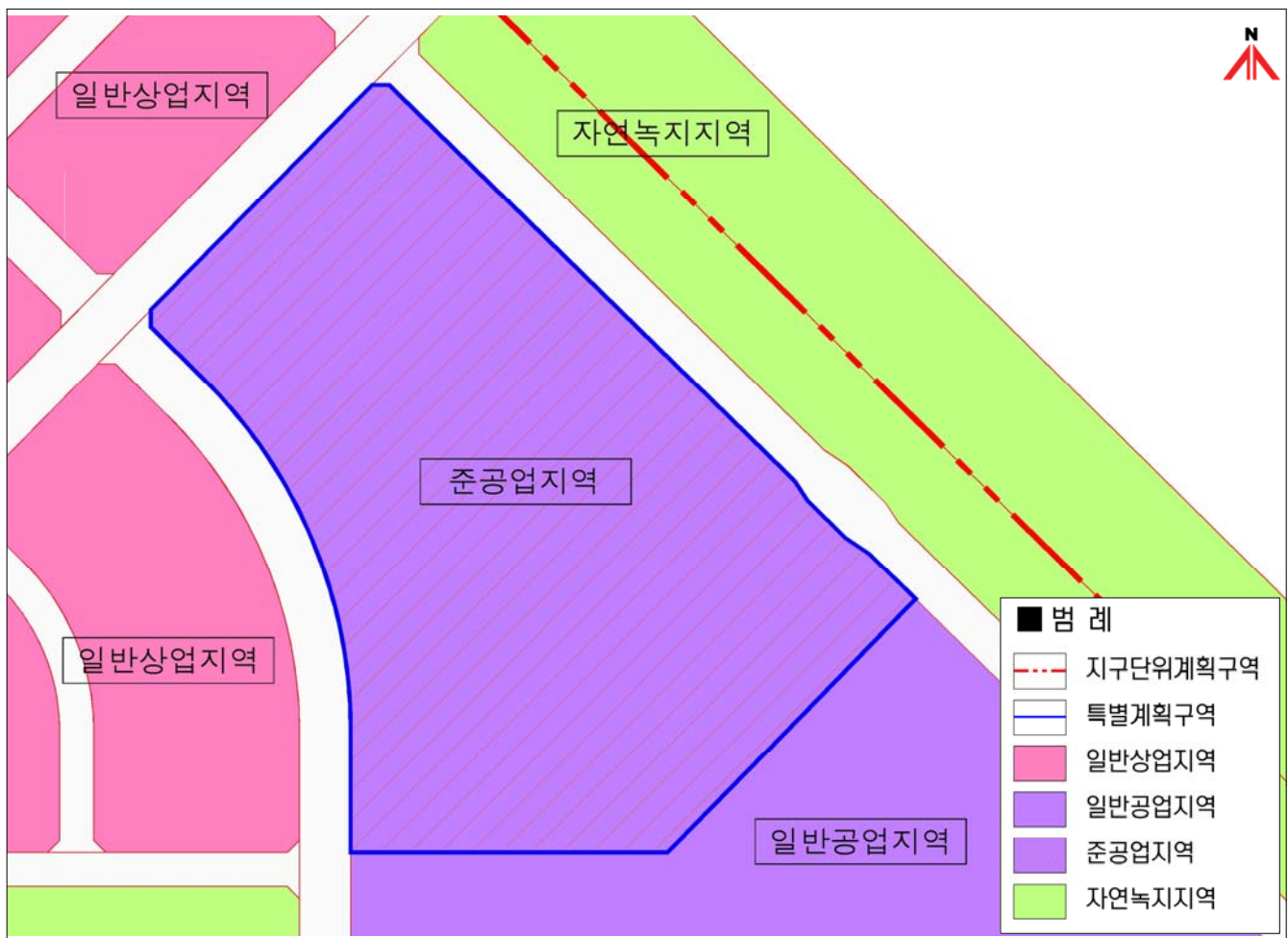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준공업지역	107,620.4	-	107,620.4	100.0	

※ 기정 : 창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고시 제2014-248호, 2014.9.25)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05	15	국지도로	296	대로3-43	대로2-23	일반도 로	-	-	-
신설	소로	2	559	8	국지도로	128	중로2-105	대로3-43	일반도 로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경사유
-	중로2-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폭원 : 15m</li> <li>- 연장 : 29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 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li> </ul>
-	소로2-5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신설</li> <li>- 폭원 : 8m</li> <li>- 연장 : 12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 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li> </ul>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sup>2</sup>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시	1	BL1	107,620.4	60,378	1	BL1-1	3,306	107,620.4	업무용지	
						BL1-2	4,464			
						BL1-3	7,769			
						BL1-4	6,401			
						BL1-5	3,595			
						BL1-6	7,759			
						BL1-7	8,383			
						BL1-8	18,701			전시용지
	1	BL2	107,620.4	3,405	1	BL2-1	3,405	107,620.4	업무용지	
						BL3-1	4,285			
						BL3-2	4,285			
						BL3-3	10,000			물류용지
						BL3-4	9,823			
						BL3-5	9,824			
						1	BL3			107,620.4
BL3-2	4,285									
BL3-3	10,000									
BL3-4	9,823									
BL3-5	9,824									
BL3-6										
BL3-7										

##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지구단위계획)	변 경(세부개발계획)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집회장, 공연장), 업무시설 등 준공업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용도</li> </ul>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용지(BL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li> <li>-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전시장 설치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소매점) 및 나목(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공연장), 라목(서점), 아목(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자목(일반음식점), 하목(일반업무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단,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전시장 설치시)</li> </ul> </li> <li>■ 업무용지(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li>■ 물류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용지(BL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li>■ 업무용지(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 해당)</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8호 창고시설(단, BL3-1~2는 제외)</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ul> </li> </ul>

< 표 계속 >

구 분		기 정(지구단위계획)	변 경(세부개발계획)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집회장, 공연장), 업무시설 등 준공업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용도</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 해당)</li> </ul> </li> </ul>
밀도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용지(BL1-8), 업무용지(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 이하</li> <li>(단, BL3-1~2에 창고시설만 설치시는 70% 이하)</li> </ul> </li> <li>■ 물류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 이하</li> </ul> </li> </ul>
	용적률	■ 4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용지(BL1-8), 업무용지(BL1-1~7, BL2-1, BL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0% 이하</li> <li>(단, BL3-1~2에 창고시설만 설치시는 350% 이하)</li> </ul> </li> <li>■ 물류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0% 이하</li> </ul> </li> </ul>
	높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용지(BL1-8), 업무용지(BL1-1~7, BL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m 이하</li> </ul> </li> <li>■ 업무용지(BL3-1~2), 물류용지(BL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m 이하</li> </ul> </li> </ul>
건축선		■ 결정도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로2-23호선에 접한 획지변은 건축한계선 20m</li> <li>- 건축물의 6층 이상 부분은 건축한계선에서 추가로 6m 이상 후퇴</li> <li>- 항만물류용지에 접한 획지변은 건축한계선 10m</li> </ul> </li> </ul>

##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별로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 가능</li> </ul> </li> <li>• 전면공지변 차량진출입구 중 대로변은 폭 8m 이하, 물류시설용지는 폭 12m 이상 확보</li> </ul>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1) 전면공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20m 이상 : 대규모 이용자를 위한 전면광장으로 조성</li> <li>• 건축한계선 6m 이상 : 통로 3m(보도와 동일하게 조성)-식수대 1.5m 이상-건물진입통로</li> </ul>	

### 2) 공개공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가로변의 결절부 및 외부에서 배후부지로의 관문을 형성하는 곳에 지정</li> <li>•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 6m 이상으로 하도록 함</li> </ul>	

### 3) 공공보행통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축 형성을 위하여 블록 내부로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 지정</li> <li>• 폭은 4m 이상, 획지선 또는 획지분할가능선 부분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선을 중심으로 각각 2m 이상 조성</li> <li>• 접하는 보도와 단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장식포장을 유도</li> </ul>	

## 다. 대지내 조경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물류용지5에 접한 획지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B=10m)으로 발생한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소음 및 공해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대지내 조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하도록 계획. 다만, 차량 및 이용자의 대지내 진출입구간은 제외</li> </ul>	

# ■ 건축부문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해 작성되는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시1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중 건축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지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의 적용은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시1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나 관련 조례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 과 ‘권장사항’ 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규제사항’ 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 은 계획적 필요에 의한 사항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 ④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 시행지침의 규제 내용을 따른다.
- ⑤ 대지상호간 합병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시행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⑦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특별계획구역”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의 관



리가 필요한 일단의 구역으로서,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시 개발자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5. “최고높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에 의한다.
  6.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7. “고층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분이 그 선을 넘어서 돌출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8.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내로의 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9. “보행출입구”라 함은 대지 및 주건축물로의 보행출입구를 당해 방향으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11. “전면공지”라 함은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 중 일반대중의 통행을 위하여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12.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13. “공동개발”이라 함은 인접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개발함을 말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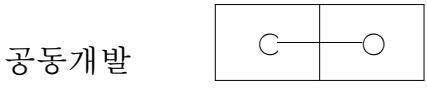
## 제 2 장 규제사항

### 제 5 조 ( 단위대지 )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1. 획지선으로 구획된 일단의 대지
  2. 합병가능 표시에 해당되는 일단의 대지

**제 6 조 ( 획지의 분할과 합병 )**

- ① 획지는 분할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획지의 합병은 공동개발이 표시된 획지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③ 도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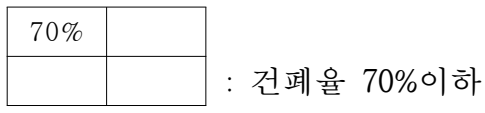


**제 7 조 ( 건축물의 용도 )**

- ①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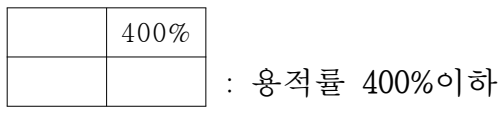
**제 8 조 ( 건폐율 )**

- ① 건폐율은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건폐율 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② 도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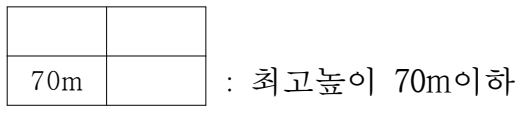
**제 9 조 ( 용적률 )**

- ① 건폐율은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용적률 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② 도면표시



**제 10 조 ( 최고높이 )**

- ① 최고높이가 지정된 대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② 도면표시



**제 11 조 ( 건축한계선 )**

- ①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과 차량출입을 위한 통제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층부 건축한계선 : 고층부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층수 이상의 건축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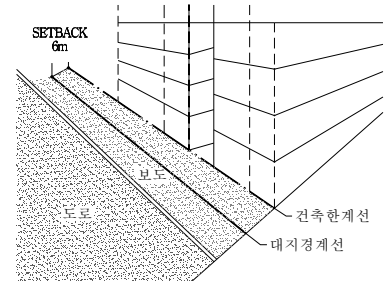
분이 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④ 도면표시



■ 건축한계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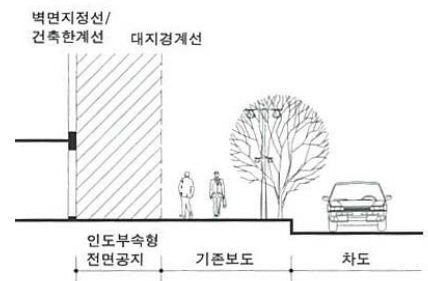
제 12 조 ( 전면공지 )

-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형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1. 제1호 건축선(6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통로 3m 조성 - 식수대 1.5m 이상 조성 - 기타 건물진입통로로 조성
2. 제2호 건축선(20m 건축선 후퇴한 경우) : 대규모 이용자를 위한 전면광장으로 조성

- ② 전면공지에는 식수대에의 식재를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진출입구간은 험프형 횡단보도 및 사고석 포장패턴 등 보행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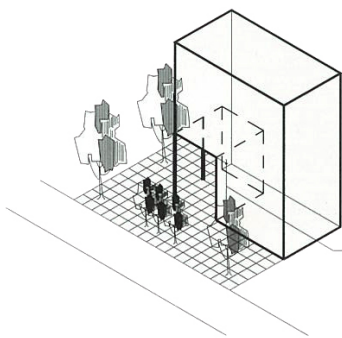
■ 전면공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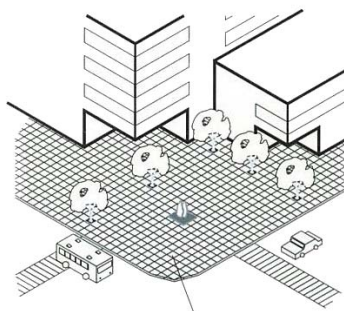
제 13 조 ( 공개공지 )

- ①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 설치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② 건축기준 완화 산정시, 공개공간(실내형)은 그 조성면적의 50%를 산정하도록 한다.
- ③ 기타 공개공지의 조성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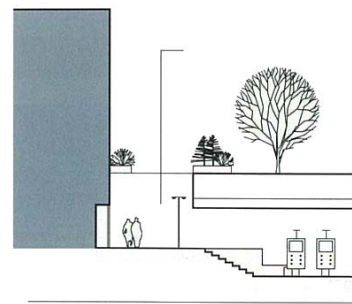
■ 공개공지 예시



필로티형 공개공지



삼지공원 형태의 공개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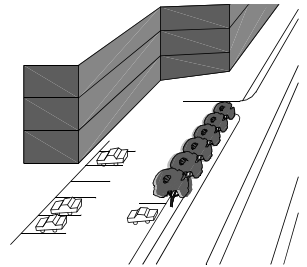
침상형 공개공지

## 제 14 조 ( 대지내 조경 )

### ① 차폐식재

1. 공용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가. 20m 이상의 도로변은 1.5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기타 도로변은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 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차폐식재 예시



- ② 결정도상에 대지내 조경이 표시된 곳에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대지내 조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 및 이용자가 대지내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간 및 이를 관리하는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 제 15 조 ( 공공보행통로 )

- ① 공공보행통로는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하는 통로로서, 24시간 개방되도록 하여야 하며 결정도상에 표시된 곳에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한다.
  - 가. 폭은 4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획지선(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m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 나. 보행자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획지선(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m내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 다. 접하는 보도와 단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로 장식포장을 하도록 한다.
  - 라. 보행안전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
  - 마.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가구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장식포장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조성되는 부분은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도록 블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공보행통로 중 장식포장 등으로 조성된 면적에 한하여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제 16 조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 ①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다.
- ②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건축물의 1층 벽면 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 ③ 건축설비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제 17 조 (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 )**

- ① 대지내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이 표시된 곳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② 전면공지면 차량진출입구 중 대로변은 폭 8m 이하, 물류시설용지는 폭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③ 도면표시

차량진출입허용구간



**제 18 조 ( 건축물의 색채 )**

- ① 건축물 외벽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 1. 밝고 온화한 색채를 기초로 하는 색상을 권장하며, 고층부(6층 이상) 및 저층부(5층 이하)의 색채변화를 채도 및 명도의 변화를 통하여 부여토록 한다.
  - 2. 채도 및 명도에 대하여만 규제하며, 색상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도록 한다.
  - 3. 강조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19 조 ( 담장 및 울타리 )**

- ①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장 권장사항**

**제 20 조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 ① 저층부, 고층부 및 옥상부에 형태·입면상의 변화를 주는 3분할 디자인을 권장한다.
- ② 기단부(돌출된 형태의 저층부)는 5층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다.
- ③ 지붕 :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 21 조 ( 주차공간 확보 )**

- ① 획지별 계획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기준으로 업무용지는 120% 이상, 전시·물류시설용지는 150%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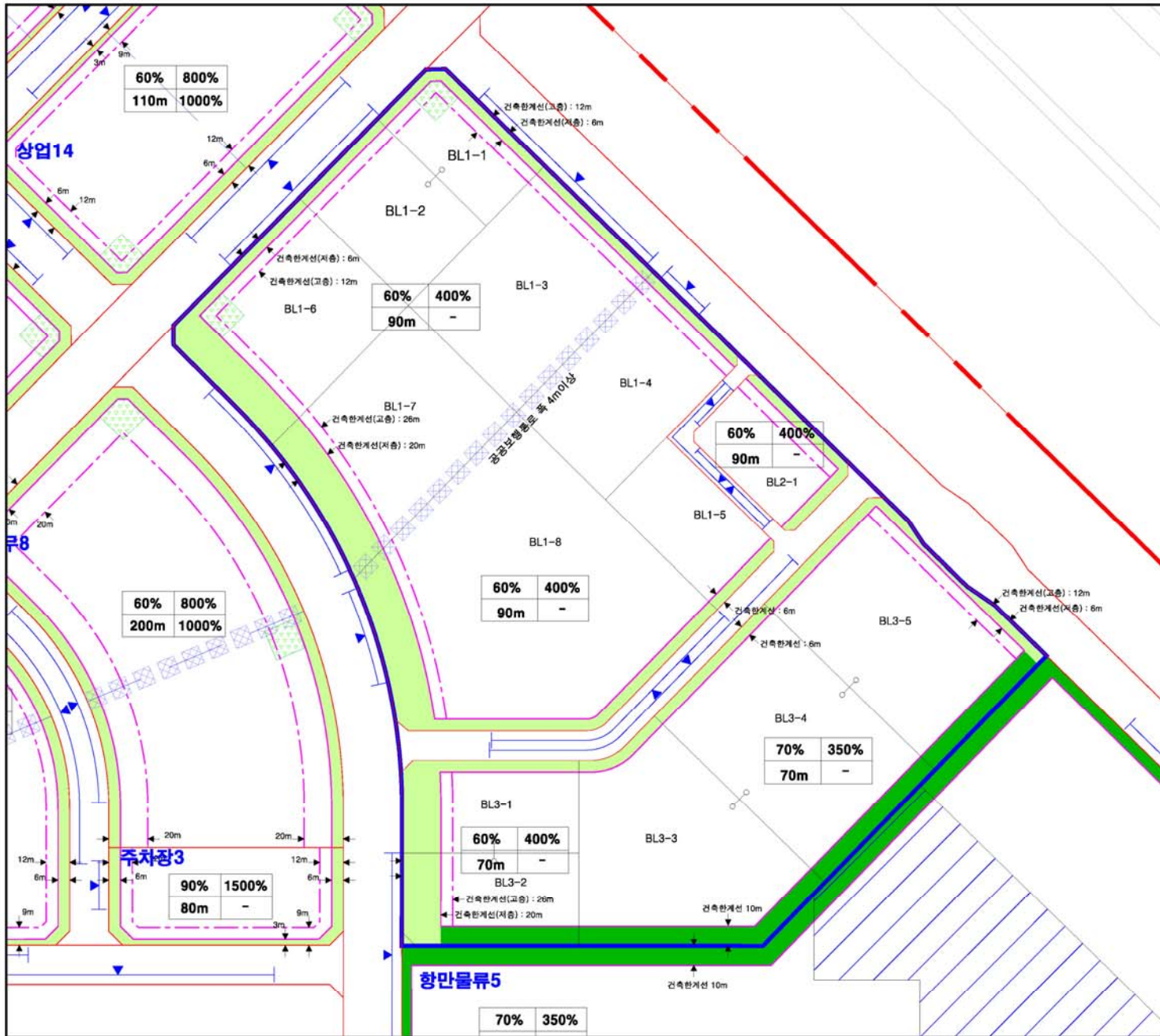




창원도시관리계획(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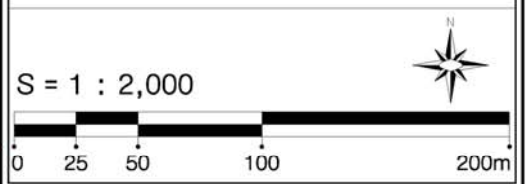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공개공지(권장)
- 대지내 조경(지정)  
(단, 자연친화성을 위한 구간 제외)
-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여용구간
- 건축한계선(저층)
- 고층부건축한계선(6층이상)
- 공동개발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



지정권자: 창원시장      지정일자: 2016. . . .  
 고시년도: 2016년      고시번호: 창원시 고시 제2016- 호  
 작성자: (주)범안엔지니어링      작성년월일: 2016. . .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창원시장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주)범안엔지니어링	창원시 도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계획과
직위	전무	지구단위담당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담당	도시계획과장
직명	도시계획기술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최인섭	이두규	김진술	이두규	김진술
확인인					